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146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5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남진삼, 박춘희 의원

1. 제안이유

연고 파악이 불가능한 시신 외에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장례를 수습할 수 없는 사망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수습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장사의 국가 책임 강화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추세와 발맞추어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방법, 내용,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7조)

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규정(안 제8조)

마. 지도·감독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9조 ~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1차: 2023. 3. 13. ~ 2023. 4. 2.(20일간), 의견 없음

- 2차: 2023. 8. 11. ~ 2023. 8. 31.(20일간), 의견 없음

※ 집행부 의견 반영 및 조문 정비 후 주요내용 변경으로 인한 수정 입법예고 실시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3. 2. 28.~ 2023. 3. 29., 아래표 참조

조례안	의견(복지정책과)	의회 의견-수용
제4조(지원대상) 3. <u>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u>	제4조(지원대상)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오해 및 갈등 요소를 예방 ⇒ 지원 대상자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으로 범위 한정하여 추진	사업 시행 초기의 혼선 및 갈등 방지를 위해 실과 의견을 수용
제5조(지원방법) ① <u>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u>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향후 장례대행업체를 통한 공영장례 추진 예정이므로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	도 지원사업 등과 관련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실과 의견을 수용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빈소 설치와 장례 예식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 가. 미성년자
 -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다. 75세 이상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래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대행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래 지원을 위해 그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 업체, 비영리 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래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 및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
연락처	(033) 330 -2504

